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 명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1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현황	5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7. 22.

다.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u>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u>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 ----- - <u>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¹⁾,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하 생략)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²⁾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2)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0호에 따라 2024년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의 적용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대상자의 자격 취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이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증 발급시점 직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도록 하여 조기에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자격·면허 등의 결격사유 적용시점에 관한 유사 입법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문 의 처

02)6788-5380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김을동의원 발의('11.6.15.), 국회의결('11.12.30.), 자격증 발급 시행('13.2.18~)

- (주요직무) 문화예술교육 교수 및 기획·진행·분석·평가 등
 - 학교·사회 예술강사, 국·공립·민간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교수

※ 의무배치기관 : 국공립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문화의 집 등

□ 운영현황

- (등급 및 분야) 2개 등급(1-2급), 11개 분야 ※ 1급 미운영
- (취득현황) '24.7월 기준 **34,263명**

분야 (11개)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이수자	합계
취득자 (단위:명)	1,652	4,651	1,879	835	2,971	5,559	595	4,649	777	8,919	1,776	34,263

-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경력, 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

- ① **2급** : 고졸이상 학력 + 2급 교육과정 이수(고졸 이상 600시간/예술대졸 150시간)
* 예술대학 재학 중 이수 또는 문체부 지정 2급 교육기관(이화여대 등 8개 대학)에서 이수
 - ② **1급(미운영)** : 2급 취득 후 **5년 경력자** + 1급 교육과정 이수(5과목 150시간)

- (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